

한경훈 / 3월+4월 / 실전GS A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49169	19.5	11.5	20	13	64	1	0.78%	5	128
550528	20	12	19	12	63	2	1.56%	6	
549787	19.5	12	20	11	62.5	3	2.34%	6	
555448	18	10	19.5	11.5	59	4	3.13%	4	
549891	19	11.5	18.5	9.5	58.5	5	3.91%	5	
555569	16.5	11.5	19.5	10.5	58	6	4.69%	6	
555329	17	10.5	19.5	10.5	57.5	7	5.47%	5	
555462	18	9.5	20.5	9.5	57.5	7	5.47%	6	
556038	18	9	18.5	11.5	57	9	7.03%	4	
549761	19	9	20	8.5	56.5	10	7.81%	5	
557068	17	10.5	18	11	56.5	10	7.81%	6	
559714	15	11	19.5	11	56.5	10	7.81%	6	
555091	17	10	18.5	10.5	56	13	10.16%	5	
551657	21	8.5	15	11	55.5	14	10.94%	5	
557042	17	12	17.5	9	55.5	14	10.94%	6	
554765	15.5	11.5	18	10	55	16	12.50%	5	
555464	18.5	9.5	19.5	7.5	55	16	12.50%	4	
555430	19	9.5	17	9	54.5	18	14.06%	5	
548595	19	10.5	16	8.5	54	19	14.84%	6	
555098	14	11.5	18.5	10	54	19	14.84%	4	
555289	16	10.5	18	9.5	54	19	14.84%	5	
554756	20	9	16	8.5	53.5	22	17.19%	6	
554779	19.5	11	13	10	53.5	22	17.19%	5	
557003	17.5	7.5	17.5	10.5	53	24	18.75%	6	
559421	13	9.5	21	9.5	53	24	18.75%	6	
549661	18	8	18	8.5	52.5	26	20.31%	5	
554782	18	11.5	12.5	10.5	52.5	26	20.31%	4	
555083	19	11	15	7.5	52.5	26	20.31%	5	
549071	18.5	10.5	16.5	7	52.5	26	20.31%	6	
550529	16	9.5	17	9.5	52	30	23.44%	5	
555069	15	11.5	17	8.5	52	30	23.44%	6	
556402	17	9.5	16.5	9	52	30	23.44%	5	
557094	19	9.5	16	7.5	52	30	23.44%	5	
559474	18	9.5	15.5	9	52	30	23.44%	5	
555444	16.5	9	17.5	8.5	51.5	35	27.34%	5	
550636	16	11	15.5	8.5	51	36	28.13%	5	
554766	18.5	8.5	16	8	51	36	28.13%	6	
555288	16.5	11	18	5.5	51	36	28.13%	6	
555426	19	8.5	15.5	8	51	36	28.13%	6	
556921	14.5	9.5	18.5	8.5	51	36	28.13%	5	
557044	19	8.5	15	8.5	51	36	28.13%	5	
556064	16.5	9.5	18.5	6	50.5	42	32.81%	5	
556739	15	10	17.5	8	50.5	42	32.81%	5	
556964	16	9.5	17	8	50.5	42	32.81%	5	
555078	15.5	11	17.5	6	50	45	35.16%	4	
550594	17.5	10	15	7.5	50	45	35.16%	5	
557055	17.5	8	14	10.5	50	45	35.16%	6	
559618	12	13	18.5	6.5	50	45	35.16%	5	
555415	15.5	9	15	10	49.5	49	38.28%	6	
556820	17	9.5	17	6	49.5	49	38.28%	5	
557139	18	7.5	16	8	49.5	49	38.28%	4	
559718	17.5	7.5	16	8.5	49.5	49	38.28%	5	
548731	15.5	10.5	16	7	49	53	41.41%	6	
555097	12.5	8.5	18	10	49	53	41.41%	5	
550521	16	8.5	17.5	6.5	48.5	55	42.97%	5	
554767	15	10	17	6.5	48.5	55	42.97%	6	
555351	15.5	9	18	6	48.5	55	42.97%	5	
555357	17	9	15.5	7	48.5	55	42.97%	7	
555398	18	9	14.5	7	48.5	55	42.97%	3	
556672	19.5	7.5	15	6.5	48.5	55	42.97%	5	
555348	14	9.5	16	9	48.5	55	42.97%	6	
548703	14	10	15	9	48	62	48.44%	5	

549662	15.5	9	17.5	6	48	62	48.44%	5
555343	14.5	5.5	20	8	48	62	48.44%	5
555666	15.5	6.5	18	8	48	62	48.44%	4
555452	16.5	10.5	11	10	48	62	48.44%	6
557117	17.5	6	16	8.5	48	62	48.44%	5
548629	14	12.5	16	5	47.5	68	53.13%	5
554781	14	11	15	7.5	47.5	68	53.13%	6
554786	15	8	14	10	47	70	54.69%	4
554879	11.5	9.5	16.5	9.5	47	70	54.69%	5
555709	16.5	6.5	14	10	47	70	54.69%	5
555380	14.5	10.5	15.5	6	46.5	73	57.03%	5
556764	16	7	14	9.5	46.5	73	57.03%	6
548652	15.5	10	11.5	9	46	75	58.59%	5
549206	15	7.5	16	7.5	46	75	58.59%	5
556584	18	9	11.5	7.5	46	75	58.59%	5
556723	16.5	8.5	16	5	46	75	58.59%	5
556675	16.5	8	14.5	7	46	75	58.59%	7
554885	15.5	10	13.5	7	46	75	58.59%	5
554875	14	8	16.5	7	45.5	81	63.28%	3
555370	13	9	16.5	7	45.5	81	63.28%	6
556361	17.5	7	14	7	45.5	81	63.28%	6
556599	10.5	9.5	17.5	8	45.5	81	63.28%	4
548660	14	9	17.5	4.5	45	85	66.41%	7
549642	13.5	7.5	15.5	8.5	45	85	66.41%	5
555334	14	7	15.5	8.5	45	85	66.41%	5
555361	14	8	16.5	6.5	45	85	66.41%	5
554777	12	11	14	7.5	44.5	89	69.53%	4
554804	14.5	8	15.5	6.5	44.5	89	69.53%	5
555434	16	8	15.5	5	44.5	89	69.53%	4
559754	13	9	15.5	7	44.5	89	69.53%	6
554770	6.5	10.5	16	10.5	43.5	93	72.66%	4
556530	15.5	7	14	7	43.5	93	72.66%	5
556988	15	9	12.5	7	43.5	93	72.66%	5
554801	14.5	9.5	12	7	43	96	75.00%	5
556811	15	8.5	14.5	5	43	96	75.00%	5
559411	13	5.5	17.5	7	43	96	75.00%	5
561301	12	6.5	15.5	9	43	96	75.00%	3
554749	12	10	14	6.5	42.5	100	78.13%	5
557089	13	9.5	14.5	5.5	42.5	100	78.13%	6
548598	12.5	9	13.5	7.5	42.5	100	78.13%	4
557063	12	9.5	14.5	6.5	42.5	100	78.13%	4
557072	12.5	7	16	7	42.5	100	78.13%	4
557037	15	5.5	14.5	7	42	105	82.03%	5
548686	15.5	6.5	12	7.5	41.5	106	82.81%	5
548623	13.5	8.5	17	2	41	107	83.59%	4
548865	11.5	7.5	15	7	41	107	83.59%	6
556915	14	8	14.5	4.5	41	107	83.59%	5
557084	16	8.5	11.5	5	41	107	83.59%	5
557157	14.5	3	18	5.5	41	107	83.59%	7
557862	10.5	12.5	13	5	41	107	83.59%	6
555332	12	8	14.5	6	40.5	113	88.28%	5
555363	15	6	13	6	40	114	89.06%	5
557057	16	8.5	15.5	0	40	114	89.06%	6
548593	15.5	9.5	10.5	4	39.5	116	90.63%	4
554810	8	9.5	15	7	39.5	116	90.63%	5
555441	12	9	11	5.5	37.5	118	92.19%	4
555756	13	9	8.5	7	37.5	118	92.19%	5
556879	12	7.5	14	3.5	37	120	93.75%	4
548701	13	4	14.5	5	36.5	121	94.53%	6
554763	13	9	12	2	36	122	95.31%	5
548590	9	0	15	7.5	31.5	123	96.09%	6
556204	11	9.5	11	0	31.5	123	96.09%	5
555358	14	7.5	9	0.5	31	125	97.66%	5
557915	11	9.5	4	2	26.5	126	98.44%	4
554797	0	10	14.5	0	24.5	127	99.22%	5

555382	4.5	4	11	0	19.5	128	100.00%	6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한경훈/3월/실전GS/6회/1번</b></p>	<p><b>채점자</b></p>
	<p><b>이은서</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다들 논점 누락 없이 잘 써주셨습니다. 다들 내용을 잘 쓰는 문제일수록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와꾸가 좋은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는 논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목차구성 및 와꾸, 사안포섭에 더욱 신경써주세요!</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다들 들어갈 판례는 잘 써주셨습니다. 을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문제이므로, 묻는바가 잘 드러나게 1) 주장1의 타당성 2) 주장2의 타당성으로 목차를 구성해주신 분들에게 점수가 잘 들어갔습니다. 또한 주장2는 ‘고려가부’에 관한 것이지 구체적사정 고려해 유사판단 하라는 건 아니었으므로 ‘고려가부’에 집중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침해금지가처분의 두 요건인 피보전채권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중, 보전의 필요성의 비중을 너무 작게 써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례와 사안포섭을 기재해주신 분들의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한 판례를 기재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해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3. 소결**

이번 문제는 다들 잘 써주셔서, 모범답안과 비교해보며 목차구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회차인만큼 잘 복습하셔서 8회차때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한경훈/3월/실전GS/6회/2번</b>	<b>채점자</b>
	<b>김나연</b>

## 1. 전반적인 총평

타겟 판례가 명확하고, 논점도 문제에서 거의 주어진 바나 다름이 없어, 논점이 탈 내지는 누락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이 판례를 잘 알고 있는가?’ 를 묻는 것이 출제의 의도입니다.

또한 해당 판례의 경우 <<법리는 특별하거나 새롭지 않았지만, 사안포섭이 주가 되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점수차이는 <<사안포섭>>이 얼마나 두껍고, 그 논리가 탄탄하며, 판례를 닮았는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거의 다 구성이 비슷하고, 무난한 답안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는, 판례의 포섭 방식을 익혀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가독성 있게’ 적어내서 답안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문을 불문하고, 사안포섭의 논리가 눈에 띄어야 고득점을 드릴 수 있었는데, 가독성이 좋지 않아 글을 잘 알아볼 수 없거나 답안 인상이 좋지 않다면 점수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의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문(1)부터 상표의 유사와 호력제한사유 판단을 두껍게 기재해주신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문제에서 을의 주장은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만큼, 이 문제의 핵심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을의 주장 당부이며, 이에 대한 판단과 사안포섭이 이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사여

부 판단, 효력제한사유 판단이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며 일부 점수 부여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걸 쓰느라 핵심적인 부분인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이 부실해졌다면, 득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몇몇 눈에 띄는 답안 외에는 거의 비슷하고 무난한 사안포섭만이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데, 판례가 쓰는 표현과 사안포섭 방법을 암기해두고 모범답안을 참고하셔서 GS를 통해 사안포섭연습을 하고, 눈에 뵈 수 있도록 답안의 인상을 신경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설문 2

갑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예상하는 문제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보/제>가 검토해야할 사항임을 기억해주셨다면,

- 1) 상표적 사용여부는 문제에서 전제로 주어졌으니 줄처리하고 넘어가도 무관하며,
- 2) 보호범위 속부, 특히 상표유사판단은 판례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만큼 사안포섭 길게 해서 판단해주셔야 했고,
- 3) 효력제한사유로는 입체 상표이니 90조1항3호, 5호 쉽게 떠올려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사판단에 치중하느라 효력제한사유 검토를 누락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였습니다. 상/보/제 검토를 꼭 기억해주시고, 까먹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유사판단시, 전체적 외관이 유사하다는 점으로만 전체관찰 활용하여 포섭해주시는 답안도 자주 보였습니다.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만, 최신판례를 타겟으로 한 문제였고, 판례에서는 양 상표에서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잘 알고 있나?’ 를 묻는 문제인만큼, 판례의 논리 흐름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결론까지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요부추출을 따로 해주고 대비해주는 것이 사안포섭의 논리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두껍게 기재하기도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부 추출하여 기재한 답안에서는 주로 <(1) 갑 상표의 요부 (2)을 상표의 요부 (3) 대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때 요부라고 판단한 구성은 목차에 함께 병기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채점을 거듭할수록 사안포섭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가독성을 키우는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3. 소결

최신판례 기반 문제로, 많은 분들이 무난한 답안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사안포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를 통하여 최신판례를 한번 더 공부해보시고, 여유가 될 때 모범답안과 같이 사안포섭 연습을 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습니다.

<b>한경훈/3월/실전GS/6회/3번</b>	<b>채점자</b>
	<b>김희진</b>

##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짝수 회차 3번 채점자입니다. 최고점은 20.5점입니다. 설문(1)은 전형적인 논점으로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2)는 문제에서 주어진 트리거를 잘 파악하고 논점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3)은 어떻게 하면 목차를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과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각각 목차로 33조 1항 4호를 먼저 판단하고 33조 2항으로 넘어간 답안이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33조 2항의 요건 판단 중 4호를 판단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4호 판단에 어느 정도 강세가 있어야 하였고 해당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33조 2항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넘어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설문에서 33조 2항을 작성할 때 많은 판례들을 쭉 나열하고 사안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강사님 답안과 같이 어떤 요건의 판례인지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보여주는 답안이 좋았습니다. 사안 포섭에서는 성경이나 성경김치와 같은 사용된 문자 상표 부분에 따옴표가 있으면 사안포섭을 읽는 과정에서의 가독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사용실적에 관해 많이 제시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길게 작성하기보다는 동일성 판단을 강하게 쓴 답안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심판원의 판단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기각될 것이다 보다는 기각심결이라고 정확히 적은 답안이 좋았습니다.

### (2) 설문 2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과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각각 목차로 보여주세요! 제출가부 아래 심결시 기준이므로 고려가 불가하다고 적혀있는 답안이 간혹 있었는데 이 경우 목차 라벨링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본문 내용을 묶어줄 수 있는 적절한 목차로 작성해주세요.

문제에서 낱짜를 상세히 제시하는 경우 꼭 시기 관련 논점들을 떠올려주세요. 심결시 기준으로 고려 가능하다는 논점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당 낱짜를 사안포섭에 적어주면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쟁점을 묻고 있으므로 결론이라는 목차를 적는다면 본문에는 심리범위와 판단시점이 문제된다와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목차 아래 인용/기각판결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쟁점보다는 판단에 가깝고 결론이라는 단순한 목차로 작성하기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3) 설문 3

문제에서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를 나누어 효력을 논하라고 묻고 있으므로 각각 목차를 뽑고 같은 하위목차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한 답안이 깔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인용상표 적격으로는 34조 1항 9호, 11호, 12호, 13호 등을 작성한 답안이 많았는데 위 조문은 등록상표가 아니어도 인용상표 적격이 있으므로 해당 설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이 부당한 경우, 乙이 甲에게 취할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읽다 보면 조건이나 주체, 객체 등을 반대로 읽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논점을 크게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항상 답안 작성 들어가기 이전에 가볍게 문제를 읽으며 확인해주세요. 아예 발견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발견했을 때보다 시간을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한 조치는 실익이 적으므로 가능한 조치를 크게 적고 불가한 조치는 가볍게만 다뤄주세요.

### 3. 소결

논점이 확실히 주어져 있는 문제의 경우 사안포섭에서 점수가 확연히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실제 판례에서 판시한 것을 모방한다고 생각하며 사안포섭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한경훈/3월/실전GS/6회/4번</b></p>	<p><b>채점자</b></p>
	<p><b>이승권</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설문(1)에선 인식도에 따른 일반론을, 설문(2)에선 인식도의 차이들을 고려하여 乙출원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문제로, 인식도에 따른 조문을 구분하며, 각 조문에 대한 포섭이 점수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최고점은 13점이었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1) 인식도에 따른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는 대부분 잘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인식도 취득에 따른 효력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 의 하위 목차 하에 33조2항의 효력을 기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출식’ 은 ‘특출인’ 보다 더 많은 인식도를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치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p> <p>2) 인식도에 따른 효력을 기재 시, 등록배제효, 사용금지효만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바, 부정경쟁방지법, 취소심판의 대상적격, 유사판단시 고려요소를 기재하신 분들은 가점요인이 되었습니다.</p> <p>(2) 설문 2</p> <p>1) 乙의 행위엔 ‘사용 및 출원’ 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출원’ 에 대한 규정만을 논의하신 분들이 많았으니, 꼭 乙행위 전부를 포섭하도록 신경써주세요!</p> <p>2) 甲의 상표는 ‘등록’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데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문제 파악시 ‘등록’ 여부 파악해주세요!</p> <p>3) 乙에 대한 조치로 무효심판, 취소심판을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선 출원 후 ‘등록’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乙상표는 ‘출원’ 단계로 판단했어야 합니다. ‘등록여부’ 를 꼭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해주세요.</p>	

4) 34조 1항 9호 내지 13호 판단하고 포섭하는 문제는 매번 출제됩니다. 각 조문에 대한 요건들을 통하여 포섭해주세요! 인식도, 상표 및 상품 유사여부, 혼동을 일으킬 염려 여부, 수요자 기만할 염려 여부 등의 포섭 없이 9호 내지 13호 해당여부를 판단한 답안은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 **3. 소결**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던 만큼, 답안을 빈칸으로 기재해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목차 및 결론이라도 기재하셔서 해당 논리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이라도 적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위태양이 ‘사용 및 출원’을 2개 이상 나오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

2. 식음(1)

1. 쟁점의 정리

상표 유사 판단 원칙에 입각하여 2의 주장이 부당함을 여의 선에서 본다.

2. 2의 주장 ① - 호칭이 같고 비유사 (부당)

(1) 상표 유사 판단 일반원칙 (判例)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 전체 구성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개관적 여의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들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  
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는지 여부에 판단한다.

(2) 전체로서 출처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判例)

외관 호칭 관념 중 비유사한 것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출처오인  
혼동 우려가 존재한다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안

- ① 甲의 호칭은 '다이슈' 2상표의 호칭은 '다사슈'로서 상품 출처  
차이만 존재할 뿐이고 ② 문자상표의 호칭이 중요한 고려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判例) 첫음절이 같은 경우 호칭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③ 전체적인 호칭과 그 음절이 짝임을 고려하면  
④ 甲의 호칭과 2의 호칭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⑤ 식명  
호칭이 비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함이 원칙이어서 호칭만으로 비유사하다는 2의 주장은  
부당하다.

⑥



### 3. 주장 ② - 거래실정 고려 불가 (부당)

#### (1) 침해 판단시 구체적 침해행위의 고려 (判例)

유사상표의 사용인지는 해당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출처의 인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사안

##### 1) 甲상표의 인지도

甲은 2011년경부터 '다이슈'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13년 기준 900여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 연간 매출액은 8,580억 원에 이른다.

##### 2) 乙의 사용례양

乙은 '다사슈' 영점점을 운영하면서 그 취급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은 甲의 '다이슈' 상품의 사용례양과 매우 흡사하게 사용하였다.

##### 3) 양상표의 유사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상표가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4) 소결

따라서 수요자들로서는 위와같은 사정에서 양상표의 상품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존재한다.

### 4. 결론

주장 모두 부당하다.

## II. 선행(2)

### 1.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침해금지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되어 사전적으로 근손해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 2. 가처분의 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3. 피보전채권의 종류 - 적극

#### (1) 침해의 요건 (선101조, 선108조 1항 1호)

유효한 상표권의 보전범위에 입어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할

#### (2) 보전범위 내인지 여부 - 적극

##### 1) 상표유사여부 - 적극

① 앞서 살펴 보았듯 호칭의 외형 비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표로서 양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외관도 유사하여 관련된 '다상수입' 등으로 유사하므로 유사하다 볼 수 있다

②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고려하여도 그 특(특징)의 표시 및 판매방식이 甲의 상표와 흡사하여 그 상표의 甲상표는 유사하다.

##### 2) 상품유사여부 - 적극

甲의 지정상품은 35류의 생활용품 판매업, 생활잡화 판매업

청한 용도를 판매 대량용 등 '이고 그의 사용서비스업은 '상표  
 용도, 생산장비등 소대용'으로 그 서비스업의 상표에용  
 제공방식 장소 등이 위차하여 영서비스업은 유사하다.

### (3) 상표적 사용 여부 - 적극

그는 '다사쉬' 표장을 간판에 표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표로 활용으로 각목이 해당되는 용도  
 행위를 한것이고 그의 가맹사업 및 소매업의 출회  
 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므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

### (4) 소결 - 피보권채권 존재

甲 상표권의 보호범위내에서 임의로서 상표적 사용행위로  
 침해금지청구권이 피보권채권으로서 인정된다.

## 4. 보전의 필요성 구분 - 적극

### (1) 입적판판의 필요성 (判例)

침해금지 및 같은 부작위 의무를 발생시키는 피보권채권의  
 가처분, 소위 민중적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입적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2) 사안

#### (1) 甲 상표의 무효사안 - 소극

甲은 오래기만 상표 '다사쉬'를 등록받은 자로서 甲의  
 상표권에 별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그의 현재 침해행위



그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甲의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중이며 甲이 정당한 차입금에 한해 甲의 상표의 인지도와 그의 상표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그의 부당한 목적으로 인정을 득할된다.

3) 소결

따라서 甲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인정된다.

5. 결론

피보권태권인 침해금지청구권과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면 甲의 신청은 인정될 것이다.

II. 서문(3)

1. 손해배상청구 (민법 109조)

상표권과 같은 권형지식재산권은 지성의 성과를 향유하기 위한 권리가므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공통불법행위시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위에서는 공통불법행위시 손해배상채무의 성격을 부진강연대 채무로 보고있다.

3. 2인 2의 공통불법행위 및 부진강연대채무 관계



그리 丙은 甲에게 丙을 영위하여 甲의 丙을 丙에게  
공통부담부담을 한 것이므로 (민법 제 160조) 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이 난 경우 그 손해배상  
채무를 丙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옳다.

4. 2이 丙을 상대로 丙을 영위하는 권리 - **구상권**

(1) 丙에게서 丙을 영위하는 권리에서 丙에게 부담부담부담을 영위  
하여 그 이상의 丙을 영위하는 것은 영위하는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2) 丙은

따라서 2이 甲에게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丙에게  
부담부담부담 관계에 있는 丙에 대해 丙의  
부담부담을 영위하는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결론

그리 丙은 공통부담부담부담부담 관계에 있고  
자기부담부담 이상은 甲에게 부담부담 2은 丙에게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끝]

**19.5**



115

[문제 2]

I 식물 a)

1. 권리범위 속복판면의 요건

상표권 사용, 보호범위에인지, 후표제권 시위는 있는지 판정한다.

2. 2주장의 타당성 - 부당

(1) 상품권 사용

형식적으로는 같으나 1종 1호 각물체별 권으로 2종의 상품의 사용에 해당한 식권적으로는 후표제권 시위를 판정할 수 있다

(2) 디자인의 상품의 관계 (부당)

1) 승전판 디자인권 사용

승전판 디자인권 사용은 상품권으로서 기능적이지 않아 상품권 채택이 아니다.

2) 디자인과 동시에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디자인과 상품은 별개의 식권적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이 독자 있는 형상 모양이나 처리된 상품권으로서 기능적 관계는 인정되는 상품권의 사용된 것이다

(3) 상품권 사용 판정 기준 (부당)

상품권 사용의 관계, 사용례양, 등극상품의 목적개념의 사용으로, 사용양(등)을 통하여 실제 개개에게서 식별권으로서 사용된 양의 기준을 판정한다

(4) 사안

## 1) 상표와의 관계 및 사용태양

甲상표는 무동적 과목등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형태 등이 특특하여 별자서로 확인할수 없는 등 식별표로서 기능하는데, Z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등록상표의 권리내용

甲의 등록상표의 행위는 甲의 재취이상이한 판매라고 인권의 여러 차례 소개한것 甲상표의 권리행사를 막았다

## 3) 사용의 자유 범위

Z상표가 甲상표와 외관이 매우 유사하고 甲의 인지도등을 고려 2는 甲상표의 선배에 평행하게는 의외로 보인다.

## 4) 소결

따라서 Z은 甲상표와 유사한 자신의 상표를 상품들의 표시로서 상품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 3. 결론

Z은 디자인 및 동시에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Z의 규정은 적용된다.

6

## II 식별(2)

## 1. 적극 권리범위(확인심판 (2차외로))

본래의 권리범위 및 예방을 위해 확인대상표준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공적인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 2. 재점의 정리 -

甲은 등재상표라 해서 등재인 자체가 인정되고 다른 상표권법규정에 의해  
 되기 않으며, 상표권사용은 앞서 살펴본바, 상품의 유사  
 여부 및 혼동가능 여부를 여의치 않다.

## 3. 상표 유사 여부 - 조국

## (1)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부1/부2)

입체상표는 외관(즉 지리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속요소의 상동성이 인연으로  
 우려가 될 수 있으나 양상표는 유사하다

## (2) 요부판별 법리 (부1/부2)

상표구성부분 전체를 관측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구성부분 중 특정  
 하여 특히 중요시되는 부분인 요부가 있는 경우 각각의 관계관  
 저를 수위에서 요부성을 가지고 유사관점의 고이 판정한다

## (3) 사례

## (1) 甲상표의 요부 - '입체', ZEBEC

- ① 甲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甲상표의 클리폰으로 각 약어에  
 있고, ② 'ZEBEC' 부분은 크고서 식별력이 클 수 있어
- ③ 이 두 부분은 상품 일반성형인 'boat'와 비견하여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④ 유사한 경우 입체적 형상  
 부분인 ZEBEC 부분이 甲상표의 요부가 된다.

## 2) 乙상표의 요부 - '입체'

① 甲의 상표가 경쟁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영향이 있고

② 'Aqua'는 수생동물이 극히 적어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③ 상해적식별력과 관련하여 甲의 상표가 乙의 상표와  
유사한 입자/부품이라

### 3) 대비

양상품의 일부 '입자' 부분은 유사한 외관의 외형적  
인상이 극히 유사하고 / 또한 입자 부분은 '천인특보'로  
중인특보의 표시는 양상품은 유사상품이라

### 4. 동격계간사유 구분

(1) 2003 1항 3호

甲상품은 식별력이 존재하므로 불도 해당되지 않는다.

(2) 2003 1항 5호

천인특보는 甲행상 외 다른 대체적 행상이 존재하고  
乙상품에 기술적유위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불도 해당  
되지 않는다

### 5. 저절 - 인위성판정

甲행상 적법하고, 甲부호부위에 속하여, 2은 상품적으로  
시행되었고, 저절유위는 사후에 인위성판정 예상된다.

[끝]

5.5

[문제 3]

I. 선출(1)

1. 개량결정 불복심판 (조116조)

심사국의 개량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에 ~~진행~~ 개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특원인~~의 이익 및 ~~심사결정~~ 확보 위임이다

2. 조 33조 1항 4호 개량위험 - 각급

(1) 의의 지리

정확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인 상표는 지리명칭의 변경을 ~~촉진~~ ~~유발~~할 수 있다

(2) 지리의 의미 (제111)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정확~~가 아니라 ~~사실~~ ~~중립~~ 지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로 이에 해당한다

(3) 사안

① 비록 甲의 상표가 ~~한반도~~의 구체적인 모양과 지명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② ~~한반도~~를 지로 ~~중립~~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것 이므로 수호자로서 ~~사실~~ ~~중립~~에 관한 ~~정확~~로 지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로 ~~한반도~~에 관한 인식으로

③ 甲의 상표는 조 33조 1항 4호의 지로에 해당  
한다.



### 3. 특333로 2항 적용예외 - 소극

#### (1) 의의 취지

특333로 1항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권사용이 아닌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가능하다, 식용품의 경우 호수를 가마란게로라

#### (2) 입적태속원칙 (判例)

당초 등록받을수있는 상표를 예외적으로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그 후의 판정은 입적태속원칙

#### (3) 특333로 1항 4호 내지 7호 해당예외 - 적극

상표는 특333로 1항 4호에 해당하므로 출원권 인정된다.

#### (4) 출원권 사용예외

甲은 출원(92.10.15) 전부터 25년이상 사업을 이어오면서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출원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하 같다.

### (5) 특정인의 특허로 식별예외 - 소극

#### 1) 특정인의 특허로 식별되었는지 판단기준 (判例)

상표 사용기간 횡수 계속성, 생산판매량·점유율, 광고선권의 방법과 횡수 등, 상품인식관계, 상품내부의 명칭의 사용 경험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 식사용상표 사용목적 권리기탁 (判例)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인정하는 상품의 정당한 사용은 식별력 취득에 목적이 되는 요건이다.

#### 3) 등록가능한 식사용상표의 범위 (判例)

특정상품의 출원이 인정되는 부분이 출원은 유리나 다른  
영신특수한 다른 물품과 함께 사용됨으로 사용됨  
을 특정상품의 사용이 아닌 식별적 관습적으로 인정함

4) 사안의 경우

① 甲이 자신의 특정상품을 관습으로 사용함에 따라  
갑치기(플러) 제각각에 대한 식별은 각기 어렵고

② 甲의 식사용상품들에서 甲 특정상품 부품을 제외한  
부품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출원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③ 이러한 특징인 '상징 디자인' 부품들이 원래 사용  
형태에서 따와서는 비공인(상당)인 甲 특정상품  
특징임을 유리나 다른 물품으로 사용됨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사용함으로 판각하기 어렵고

④ 복제되는 인하여 甲식사용 상품에서 출원된 디자인  
'상징 디자인' 부품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⑤ 甲 특정상품과 유사하게 특정한 출원인 식별  
되어 있음 불충분함.

(6) 사용상품에 관습으로 특정상품인지

식사용상품을 사용한 상품에 출원되면 사용상품을 출원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권332 2항 인정되지 않음 권332 1항 4호 인정되며 기각판결함



## II. 심판(2)

### 1. 심판취소요청 (3항 63)

심판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말하는 법원의 소이다.

심판취소요청은 심판이 재판권이 아닌 때 제기할 수 없다.

### 2. 심판취소요청의 심리범위 - 원칙적 무제한설 (判例)

당사자는 심판에서 판단되지 않은 이항의 위법사유를 심판취소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고 심판취소요청을 할 당시의 법원  
판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제한 없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  
항변의 기록을 산출할 수 있다

### 3. 심판 위법성 판단시점 (判例)

심판의 위법여부는 심판 당시의 법령과 사법상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되고 심판이후 바뀐 법령은 사법관 심판 당시  
부작법 여부를 관할해선 안 된다.

### 4. 사안의 경우

#### (1) 사용신원 특가제출가부 재극

무제한설이 입각하여 무엇 기록상 원위 위법사유로서 사법  
원에 관한 기록을 특가제출할 수 있고 항변도 이를 신리  
판단하여 항변의 기록을 산출할 수 있다

(2) 사용실적으로 심판 위법성 판단가부-6급

심판 취소소 등은 심판 당시의 사정의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판결은  
하. 기각심판 (25.4.14) 이후 사정된 25.5.10 ~  
26.1.15 에 사용된 심판은 기각심판의 당부를 도출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h

III. 실문(3)

1. 등록이 정당인 경우 甲상표권의 효력

(1) 개호

결정권 2항에 의해 등록된 경우 하자 있는 권리로서 원상회복권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효력

- ① 주요권 효력으로서 자신의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독점하여  
(제109조)
- ② 소유권 효력으로서 타인의 사내거래는 사외거래  
(제101조, 제102조(강제)) 타인의 유사상표(제104조) 등록에  
대 효가 미친다 (제103조(강제))

2. 등록이 부당인 경우 甲상표권의 효력

(1) 개호

하자는 권리로써 특허가능성 및 권리내용이 공개된다

(2) 효력

- ① 등록무효 (제111조) 전까지는 주요권 효력으로서 독점권을



상위권지문 (20893) 특허실적특성시 소급소급권지

② 등록특허실적특성으로 카카오톡 불가권 (제1/제)

③ 특허실적이 명백한 상위의 행사는 권리범위로서 제안되므로 (제1/제) 사후권리행위 등 불가하다. 다만 특허실적권까지 등록해제하는 존재한다 (권 943 (당 1호))

3. 20이 특허권 조지

(1) 특허실적행위 (제 113)

제 113조 1항 4호 이유로 甲상행위를 소급소급 시권속한다

(2) 소급소급권리행위(즉인사건 행위 (제 121조))

특허제정사후 권 90조 1항 4호를 주장하여 소급소급한다.

(3) 상표권 포기 양수행위

디자인은 상표권 이유로 상표권 포기 또는 양수행위를 내보수한다.

(4) 출원을 통한 상표신청

20이 자신의 사업선착순 출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권속 입증한다.

[결]

h

20

고생이 없었다! 피아링!

[문제1]

I. 원문(1)

1. 재정정리

상표법에서 상품의 유사판단 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전반적으로 남기고 구체적인 거래실정 측면에서 각 단계별 취급을 살펴본다.

2. 상품 유사판단 일반론

↳ 유사판단 일반원칙 취체

대비되는 양 상품의 외관·호칭·관념은 전체적·객관적·이력적으로 관찰해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수용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상을 기준으로 출처의 모인·혼동을 일으킬 우려 유무는지 판단한다.

3.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단 취체

(1) 문자상품의 일반적 거래실정

문자상품의 경우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인이고 여러 응절 단어의 경우 어두 부분이 강하게 작용되고 인식된다.

(2) 칭해신용에서 구체적 거래실정

유사상품의 수요에 해당하는지는 두 상품이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호칭·관념 등에 의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등을 종합할 때  
 상품을 때와 장소를 달리해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  
 자가 상품 출처에 의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4. 사안

##### (1) 신의 호칭 비유사 주장

문자 형태의 경우 호칭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다이슈"와  
 "다사슈"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도 동일하여  
 단지 중간음절만에 차이 있다. 그러나 호칭의 어두 부분은  
 중하는 일반적 거래실정 고려시 양 상품을 비유사하다  
 보기에 부족하다

##### (2) 신의 전사·판매 방식 고려 불가 주장

침해가 문제될 때 상품을 이격적으로 관찰시 수요자가 느끼는  
 인상 등도 일그러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1998년  
 2601년 부터 '다이슈'라는 상표로 사업을 영위해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점포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8,580억 원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잘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은 '다사슈'에서 주목  
 하는 상품과 그 전사·판매 방식을 무가 유사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 사업에 관한 구체적 거래실정 판단시 양 상품을  
 유사하게 볼 여지 크다.

(가) 2점

따라서 위 2인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6

II. 설원(2)

1. 문제점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200) 신청시 상표사용자중 1인만을 상대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2의 행위가 침해로 인정되어 권리 대항 받을 범위 있는지 살펴본다.

2. 2, 10의 사용행위 사실 - 유사확정적 공동관계

2와 10은 '다사슈'라는 표장을 관판에 독사해 소개설을 공동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1인만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조합체 형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득의 침해 대항을 받게 된다면 모두에게 공동으로 소송 등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항의확정적 판단만 내려지면 되기 에 유사확정적 공동 관계가 볼 수 있다.

3. 2의 침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

(1) 상표 유사 판단 (적극)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사상표에서 2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구체적 거대일정까지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

가 甲의 '다사슈'와 乙의 '다사슈'에 관계 존재의 원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크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 상품유사 판단 (적용)

甲이 영위하는 사업은 저류의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이고, 乙이 영위하는 사업도 동일하므로 상품은  
 동일하다.

(3) 상품적 사항 (적용)

乙은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이고, '다사슈'라는  
 포장용 간편에 표시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하  
 여 식별표지로서 '다사슈'를 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선사용권 (적용)

乙은 2012년 1월 2일부터 '다사슈'라는 포장용을 사용했는  
 데 이는 甲의 등록 후 이루어진 사용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 없다.

(5) 후역제한사유 (적용)

乙이 상권로서 '다사슈'를 부정경쟁목적 없이 사용한 것  
 이라면 90조 1항 1호의 후역제한사유 적용될 여지 없으나  
 乙이 상권로서 사용한 것이란 제사가 없고 甲의 '다사슈'  
 인수로 관여시 乙에게 부정경쟁목적 없었다고 단정하  
 수 없� 후역제한사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예상 결과 - 인력

(1) 나에게만 한정된 것에 대해

근원적 공동 관계에 있었던 것이나 복수 없이 어느 용제  
되지 않는다.

(2) 내가 침해했는지 여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이견

인용된 것이다.

9.5

II. 식원(3)

1. ㄱ의 지위

ㄱ은 ㄴ과 함께 甲의 '다이슈' 라는 표창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한 자로서 그에게도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  
정된다. ....

2. ㄴ과 ㄱ의 행위 비권

ㄴ과 ㄱ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들 사이에 복권  
정 연대책위가 인정된다.

3. ㄴ의 조치 - 귀상권 행사

(1) 귀상권 행사 가부 배례

복권정연대책위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



형평의 원칙상 일정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 바깥에 따라 귀상권 행사할 수 있다.

(2) 은라 씨의 부담부분

을 사이에 정해준 것은 수익에 대해 수익 바운 약자 사자도 변하지 않아 그 바운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은라 씨의 부담도 균등한 것으로 본다. 5.5

(3) 은경

다라시 무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은 씨에 1/3 그 절반의 비용을 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끝]

[문제-2]

9

도. 변(1)

1. 권리변의 확인판단 의미 및 상회범위 (12)

권리변의 확인판단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권리제한 사유 있는지, 상회권 보충범위에 속하는지, 상회적으로 사행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 2. 상품적 사용에 대한 판단

## (1) 판단기준 사례

상품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는 디자인과 상품의 관계, 디자인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국지·지역상,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해 먼저 거래계에서 식별되지 않아서 사용한 것인지 판단한다.

## (2) 디자인으로만 사용한 경우 사례

식별되지 않아서 사용한 것이 아닌 승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식별이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

## (3) 디자인과 동시에 상품으로 사용한 경우 사례

디자인과 상품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계상이어도 출처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상품으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사안 - 신주장복당

## (1) 외관의 유사

신이 사용하고 있는 수상레저가구의 형상은 무이 등 특별한 압제상표와 그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 (2) 甲 상표의 인지도

甲 등록상표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장기간 판매돼왔고 언론·책에 여러차례 소개되면서 무이 출처표지로서 잘 알려졌다.

## (3) 상표권 침해

이를 종합하여 은은 명의 상표 태양관 유사하게 5상 레저  
기극로서 사용하였고, 명의 등록상표는 그의 니별표지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2009년부터 판매해왔던 명의 사자는  
밝은 때 은은 그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볼 여지없이 디자인  
오류만 사용했다기 보다 니별표지로서 사용했다 보인다.

## (4) 도표

따라서 은은의 주장은 부당하다.

4.5

## II. 설원(2)

## 1. 상표권 침해 판단

## (1) 일반원칙 침해

상표권의 타락·착오·관념을 객관적·~~비~~이격적, 전체  
적으 관조해 소비자가 느끼는 출처의 원인 혼동 영향을  
판단한다.

## (2) 압제상표의 경우 침해

압제상표의 경우 그 타락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면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원인·혼동 일으킬 영여 크다.

## (3) 압제상표에 용자등이 결합한 경우 침해

압제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이 결합되었다면  
그것은 식별력 판단할 수 있다.

## (4) 사안

입체상표의 경우 그 외관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무가 2이 사용하는 상표는 외관의 지배적 인상이 유사한 상표로서, 앞면이나 옆면에 표시된 문자만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boat"와 "ZEBEC" "Agua" 등은 특별히 도안화되어 시선을 끄는 사정이 안 보이고 "boat"나 "Agua"는 수평레저 기구를 사용하는 거래관행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가지는 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여전히 외관안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가 2의 상표는 유사하다.

2. 관련제한 사유(1) 9005의의 취지

가능성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 입체적 형상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 배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지, 기술적 우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핀다.

## (3) 사안

수평레저 기구에서는 바람(공기)이 들어간 보트가 즉각 이용되는데 이는 무의 형상이 아니므로 다양한 형태를 존재할 수 있기에 대체 형상이 많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의 상표의 관련제한 사유도 없다.

3. 권리 - 인위성

[결]

[문제 - 가]

5. 보문(1)

1. 제14조의 취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특허인에게만 독점사용권 부여하기에 부적합하다.

2. 甲의 상표가 제14조에 해당하는지

(1) '지도'의 의미 취지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일반 수요자가 그에 준하게 사회통념상 지리명을 인식할 수 있다면 본권의 지도에 해당한다.

(2) 사안

甲출원상표는 정확한 지도의 형상이나 아니든 그 형이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고 크고 또한 완연하게 표시된 것으로 정확한 지도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일반 수요자는 사회통념상 이를 대한민국 지도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4조의 지도에 해당하고, 별다른 식별력 있는 국적이 표현된 것도 아니어서

'지도만으로 된 상품'에 해당한다.

### 3. 甲에게 ㉔ 인정된 여지 있는지

#### (1) ㉔의 의미·취지

상표사용자 및 수요자 보호를 위해 상표주체적 인식을  
가야 할 것이다.

#### (2) 양적 해석 원칙 취지

원래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 독자인에게 독점사용  
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은 양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3) ㉔과 내지 ㉔17에 해당 여부 (적극)

甲 상표는 ㉔42 개척결정 내려졌다.

#### (4) 출원 전부터 사용하였는지 (적극)

출원일인 2022. 10. 15 기준 甲은 2년 이상 사업을 이어  
오며 실사용상표를 각종 광고 제품에 대해 판매해왔다.

#### (5) 특정인의 출처로서 인식 (적극)

甲은 2023년 기준 전국에 200여개의 중판 및 대리점은  
보유하고 있고, 2019년부터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고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23  
년 2.4%를 넘는 성장하기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오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그 향상을 위해 매년  
광고비로만 1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그의 실사용상  
표들은 甲의 출처로서 인식되었다고 보인다.

(6) 사유상표와 사용상품에 대한 출원 (123)1) 동형상표에 대한 유사판단 사례

동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결국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2) 신사유상표 창작가능 사례

사유에 의해 신변적을 취득한 상표는 신사유상표 그 자체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창작 가능한 신사유상표 범위 사례

동일하거나 동일한 인정되는 부분이고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디자인과 함께 사유상표로 그 사유상표를 창작할 수 있다.

4) 사안

무의 신사유상표는 무출원상표에 유사한 형태로 추가된 결합된 형태로서 '상징'이나 '상징감치'가 지르거나 독립성을 유지할 채 분리 인식될 수 있다는 사안이 보이지 않아 그가 신변적을 취득한 상표는 신사유상표에 관정하고, 무출원상표에까지 미친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유상표에 대해 그대로 출원한 것이 아니다.

4. 예상상표 - 기각

각 ①4에 해당하고 각 ②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다.

상표

## II. 서론(2)

1. 심판촉진소송 상회 범위 사례

심판촉진소송에서는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위법사유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중원인의 이익에 반하지도 않는다.

→ 사안: 제척가능.

## 2. 명목상 소송을 ㉔㉕ 소송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1) 관련 사례

㉔㉕가 인정되려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로 소송을 해서 그 소송 실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원단계의 기전 절차를 치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한 것에 불과하다면 ㉔㉕ 수준의 상회  
소송이라 보기 어렵다.

## (2) 사안

<sup>심판촉진의 노조 제가한 조</sup>  
甲은 2024. 4. 14 ~~가정법정 부속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대위~~  
~~판결~~ 2024. 5. 10부터 甲 중원상회와 동일하게 있는  
신상회상회에 대한 추가 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2026. 1. 10에 연된 변론기일 전까지 甲 중원상회에  
대해 ㉔㉕를 적용받으려는 명목상 소송을 한 것에  
으로 보여 ㉔㉕를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 3. 결론

①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한 심판촉진소송의 상회

법위아 ② 영특상 사상에 대한 ㄱㄱㄹ 안정 기부가 존재한다.

7. 사안(가)

1. 甲상권권의 권리

(1) 등록이 상당한 경우

1) 권리제한사유 관련

ㄱㄱㄹ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90①2의 상표로부터 그 일부 해당 상표에 대해서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2) 보충 범위

ㄱㄱㄹ로 정당하게 등록된 부분 전체에 대해 적극적 권리가 인정된다. 그와 유사 범위까지는 소극적 권리도 인정된다.

(2) 등록이 부당한 경우

1) 하자치위 관련

등록이 부당하게 되었다가 그 후 식별력을 취득했다 해서 등록의 부적합이 하자치위되지 않는다.

2) 권리제한사유 관련

정당하게 등록된 것이 아니라서 90①2 순자의 상표에 그러해 해당한 것인 바, 그에 관해 상표권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3) 보충 범위~~

~~부당한 등록으로서 그 보충 범위로~~

2. 등록이 부당한 경우 신의 경치 - 무효성판정

신은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 甲 상품에 대해 무효성판을 청구해 승복시킬 수 있다.

[결]

1h.h

[문제 4]

1. 식별(1)

1. 특정상태

(1) 지리

일반 소비자 거래자에게 인식되지 않은 지리로서 그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곤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예시

아주 흔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영업을 이 기의 없어 소비자에게 느낌이 많이 안 된 경우를 말한다.

(3) 권력

식별 표시로서 #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 관해선 타인에게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등록은 배제시키기 어렵다

2. 가치 있는 정위 상태

(1) 지리

그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곤 초기엔 아직 어려우나, 그와 관련된 활발히 영업을 한 탓에 그 지역 내에서는 일부 소비자

에게 인식 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를 말한다.

(2) 예시

특정 지역, 특정 그룹의 수급자에게는 기억에 남을 정도의 독창으로 인식된 경우를 포함한다.

(3) 효과

인식도를 근거로 등록비제출나 사용금지료가 발생하긴 ~~아니~~ ~~아니~~ 어려운 상태다.

3. 특수인의 출처로 인식·주지·지명할 때

(1) 지명

자신의 식별표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인식도 정도에 따라 그냥 인식된 것인지, 주지해진 것인지, 지명할 것인지를 나뉜다.

(2) 주지

1) 특수인의 출처로 인식

등록비제출로서 34①12호단, 34①13 등이 문제될 수 있다.

2) 특수인의 출처로 주지

34①12호단, 34①13은 물론 34①9까지 문제 생출 수 있다.

일반 수급자에게 '별리' 알려진 정도이다.

3) 특수인의 출처로 지명

34①12호단, 34①13, 34①9는 물론 34①11 전면까지

문제 생출 수 있다. 일반 수급자에게 '현시히' 알려진

정도이다.



7. 식권(2)

1. 무역 인식도 취득 사항 - 가치있는 점유상태 여지

무엇 1990년대부터 가구점을 ~~취득~~ = 운영하던 자이나  
그에게 인식이 ~~취득되었다는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2. 신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1) 3409, 3403, 34011전단 (신규)

인식을 취득한 사항이 없어 본 국자는 문제상을 느꼈다.

(2) 34012전단 (여지)

가치 있는 점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본 국  
정을 문제 남아 등록 배제를 시킬 수 있다. ?

(3) 3303 (적극)

신의 상태는 '월드 퍼니처'로 '월드'는 '세계적인'을  
뜻하는 영단어고, '퍼니처'는 '가구'를 뜻하는  
영단어이어서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시킬  
수 있다.

? **기술적 US 가능성 없음!**  
3303 34015

(4) 3307 (적극)

실질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그의 상태는 차라상품의  
변역과 독점 적왕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등록을 시킬  
않을 수 있다

3. 나에게 침해 사항 받았을 때 권리

(1) 99② 선사특권

한약 상권로서 이용하고 있었다면 99②의 선사특권

~~주장을 해볼 수 있다~~

2.5

[끝]

17

-아하 여백-

질(2) 잊으세요!

가득서 좋아요